

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3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」

2. 제정이유

-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및 신청방법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지원기준, 지원내용, 지원기간 등을 규정함(안 제5조~제7조)
- 라.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 등 관리 등을 명시함(안 제8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3년 4월 1일까지(20일 이상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 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, 여성가족과(우 10932)
 - 전화 : 031-940-8686 / 팩스 031-940-4419 / 이메일 19840812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